

제284회 임시회
성 북 구 의 회

의안
번호 제376호

**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(안) 검토보고서**



행정기획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 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전문위원 이 병 곤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 376 호
-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제 출 일 : 2021. 8. 23.
- 회 부 일 : 2021. 8. 26.

2. 제안이유

「도로명주소법」이 전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¹⁾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- 행정안전부 「주소정보²⁾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」(2021.2.21.)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변경

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⇒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

나.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 규정 (안 제2조)

-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에 따라 도로주소명, 기초번호³⁾,

1) 「도로명주소법」 제31조 (조례의 제정)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, 유지·관리, 손해배상 공제 가입,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2) 주소정보 : 도로명, 기초번호, 도로명주소, 국가기초구역, 국가지점번호,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

3) 기초번호 : 도로구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고 시작점으로부터 왼쪽은 홀수번호,

국가기초구역⁴⁾, 국가지점번호⁵⁾, 사물주소⁶⁾ 등 주소정보를 확대
사용하기 위한 내용 규정

다.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광고비용을 규정
(안 제3조 및 제4조)

-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, 제24조제1항 및 제54조제6항에 따라 건물번호 및 사물주소⁷⁾ 부여 또는 변경시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제작비용 산정 기준일과 비용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 (안 제3조)
- 「도로명주소법」 제25조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 게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)

라.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
마. “주소정보위원회”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(안 제6조 ~ 12조)

- 조례 제명의 변경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도 “도로명주소위원회”에서 “주소정보위원회”로 변경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⁸⁾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를

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하여 진행할수록 번호가 증가하게 되어 있는 가상의 간격

- 4) 국가기초구역 : 우체국, 경찰서, 소방서 등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공동 활용하고자 국토를 일정한 단위로 구획한 제도. 우편번호로 사용됨
- 5) 국가지점번호 : 건물이 없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지역 등에 지점번호를 부여한 것으로, 산림·해양 등 비거주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. 한글 2자와 숫자 8글자로 표기
- 6) 사물주소 :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
- 7) 「도로명주소법」 제24조(사물주소)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. 사물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1.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
 - 2. 옥외 대피 시설
 - 3. 버스 및 택시 정류장
 - 4. 주차장
 - 5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
- 8)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

초과하지 않도록 규정

바.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 조항을 규정함 (안 제14조)

사.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⁹⁾에 관한 사항 (안 제15조)

-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「도로명주소법」 제33조제2항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,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도로명판 설치 등을 안 제15조 각호에 열거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명주소법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

다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의안공고 : 2021. 8. .

5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전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하고 고도화 한 것으로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지표면 도로에만 2차원의 평면적 주소를 부여하였던 것을 “도로”의 정의 확대를 통하여 고가·지하차도, 육교, 버스 및 택시정류장, 옥외 대피시설 등에도 별도의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입체적인 주소부여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도시구조 변화 대응 및 위치안내와 관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국민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줄 것으로 사료됨.

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9) 「도로명주소법」 제33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, 「전자정부법」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